

‘문민’정권 1년의 인권

서준식 / <인권하루소식> 발행인,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1. 무너진 기대: 인권정책 없는 ‘문민’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상황 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다. 오랜 군사독재의 횡포 속에서 웅크리고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문민’이라는 언어의 마술은 적어도 초기에는 상당한 효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혀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3·6 대사면’, ‘위대한 대화합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 석방조치는 그러나 참으로 민망스러운 것이었다. 석방된 시국·공안사범 144명은 전체 양심수의 27%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사면되지 않았어도 만기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분단과 냉전의 희생양인 좌익수들은 89명 중 6명 밖에 석방되지 않았다. 석방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강기훈씨, 윤석양씨 등도 석방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감옥에 남아 있다.

‘3·6 대사면’은 이른바 ‘문민’시대 인권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고해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의 1년동안 이것은 거듭되는 실망 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이제 ‘문민’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는 거의 분명해졌다.

‘문민’정부가 만일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

둘째, 여러 가지 법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셋째,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지 계몽이다.

‘문민’정부는 이 어느 것 하나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전혀 없어 보인다.

2. 외면되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오랜 군사독재통치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강요했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이 과거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독재시절의 인권문제는 동시에 분명히 현재의 인권문제인 것이다.

재판도 없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안감호소에서 빼앗긴 백수십명의 장기수들, 70년대 이후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된 ‘조작 간첩’들은 여전히 피눈물 삼키며 죽은 듯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삼청교육’의 악몽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오늘도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계속 정신병원에 들락거리거나 정신 병을 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심중팔구 권력의 피묻은 손이 어둠 속에서 저질렀을 42건의 ‘의문사’ 사건은 아직 단 한건도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1517명의 해직교사 대부분이 최근 복직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교조의 맹렬한 노력과 ‘전교

조 탈퇴'라는 다소 굴욕적인 양보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다. 약 1200명에 이르는 해직 언론인, 무려 5200여명에 이르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내지 명예회복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6 대사면'에서 석방되지 않았던 200여명의 양심수들은 그 극히 일부가 석가 탄신일 혹은 연말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으며, '문민'정부 1년만에 만들어진 222명(민가협 통계)의 양심수가 새롭게 그 자리를 메꾸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어둠의 한시절을 종결"지을 것을 표방한 '문민'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문민' 출범 후 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다. 갖가지 인권범죄의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진상조사에 착수할 조짐마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끔찍한 권력범죄들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시켜준 '정치판사'들은 오늘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문민'정부는 끝내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민'과 '군사'의 진정한 단절점(斷絕點)은 바로 '시인'에 있다. 즉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악행을 '시인'할 수 있는 '문민'만이 군사독재 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문민'의 이름에 값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태(胎)를 빌어서 출생한 김영삼 정권은 당연한 일로서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까닭에 직장에서 내몰렸음을 '시인'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좌익분자'들이 재판도 없이 십수년동안이나 구금 당한 사실이 인권침해였음을 '시인'하지 않으며, '간첩'이 70년대 초 이후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 되었음을 '시인'하지 않는다. 33세 나이에 여섯번이나 정신병원을 드나든 문국진씨의 고통스러운 정신질환이 80년과 86년에 그가 경찰에서 받은 처참한 고문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으며, 많은 '의문사'가 권력의 테러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는다. 물론 '정치판사'의 존재도 '시인'하지 않는다.

과거의 권력에 의한 인권범죄를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영삼적 '문민'과 과거의 '군사' 사이에 단절은 없다. 즉 '문민'적 인권상황과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는 것이다.

3. '문민'시대에도 여전히 정권에 봉사하는 억압법제

'문민'의 이름에 값하는 정부, 그러니까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개폐하고 국민들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와 보장하는 법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특히 '문민'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이들 법률과 제도는 적어도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이러한 법제도 정비 의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문민'정부는 지금 군사독재시기에 만들어진 악법이 안겨주는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이를 개폐하기 위한 노력을 사보타지 하고 있다.

인권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만사 젖혀놓고 개폐해야 할 많은 법률과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불법 입법기구에서 만들어진 '법률'

우선 과거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정권 탈취자들에 의해 구성된 불법 입법기관이 대량생산해낸 이른바 '법률'들이 있다. 1467건(전체 법률의 32%)에 이르는 이런 '법률'의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민'정부는 이들 사이비 법률의 정비작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사건은 '문민' 1년에도 숨가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문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인권 탄압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최근의 민가협 통계에 의하면 김영삼정부 출범 1년만에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자는 모두 13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전체 시국·공안사건 구속자 222명 중 62.4%에 해당한다. (한겨레신문 1994.3.9)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실현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되어 있는지는 전체시국·공안 사법 중에 차지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비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1994년 2월 <민가협>통계)

1990년 6월	- 32%	(398명)
1991년 6월	- 41%	(537명)
1992년 5월	- 47%	(455명)
1993년 2월	- 59.1%	(399명)
1993년 9월	- 70.4%	(253명)
1994년 2월	- 83.3%	(220명)

또한 국가보안법사건 불기소율 통계는 '문민시대'가 얼마나 국가보안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대인가를 보여준다. (1993년 가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1990년	- 27.5%
1991년	- 33.0%
1992년	- 16.5%
1993년	- 11.3%

국가보안법이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악용되어왔음을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표현·집회·여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라고 비난했으며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바야흐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공식 입장으로서 굳힌 국가보안법 존속 방침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똑같은 완고함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거부하고 있다. '문민'시대에 들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는 완전히 죽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개폐되어야 할 법률은 노동관계법이다.

그러나 ILO에서 한국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차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 시급한 부분마저 개정될 전망이 없다.

노동부 산하에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개정시안을 마련했지만 이 시안에는 집권세력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이 포기된 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우르파이 라운드 타결 직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안정을 위한 임금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자 억압법으로서의 노동법제가 개정될 가능성은 다시 멀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리휴가 무급화' 결정과 함께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어차피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물건너갔다."는 분위기, 아니, 경쟁력 강화가 '신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은 곧 '개악'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에서 시행된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

4) 사법제도 개혁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법조계를 망라하여 만들어진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라 해도 거기서 진행

된 논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역시 완강한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치판사’ 척결문제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조건에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어차피 맥빠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하든 말든 여전히 이 순간에도 공안경찰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납치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관이 변호인 면회를 방해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제도나 불구속재판원칙이 강력한 공안경찰과 ‘정치판사’가 염존하는 조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상고허가제등 사법개혁에 역행되는 신설 제도가 더 맹위를 떨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나간 1년동안 사법부의 몇몇 판결은 인권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팔목할 만한 진보를 보였다. 10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필리핀 노동자 2명에게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어온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도 과거 판례와는 달리 황석영, 김삼석 재판에서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에게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들은 어쨌든 사법제도가 개선되어나갈 것을 예시해준다. 그러나 물론 사법제도의 개혁은 ‘문민’정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들의 용기와 노력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나갈 것이다.

4. 언제까지 인권교육의 황무지인가?

‘인권교육’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단히 생소한 말이다. 누구나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장 받아야 할 인권항목을 우선 알아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인권’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은 결코 배우지 않는 직감이나 양식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멀리는 유구한 봉건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거쳐, 그리고 특히 해방 후 오랜 독재의 시기에 우리는 ‘건방지지 말 것’, ‘자유가 방종에 흐르기 쉬움’, 그리고 ‘악법도 법’임을 골수에 박히도록 배워왔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군사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공기 마시듯이 몸에 익혀왔으며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멋대로의 인권유린에 무감각했다. ‘인권교육’이라는 말이 생소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군사독재시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인권교육이란 눈곱만치도 없었고 반인권교육만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쳤던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히 ‘문민’을 자처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이 인권교육이 ‘문민’정부의 정책 일정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다.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공무원 특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권교육, 그리고 UN 가입국으로서 내지는 인권에 관한 여러 다자간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인 인권에 관한 갖가지 UN 문서·조약들을 알기 쉽게 번역·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문민’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문민’ 2기 내무부 장관인 최형우씨의 “사상범에게는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발언에서, 총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는 ‘선진국’을 부러워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출범 초기부터 강압적인 자세로 들이대어진 ‘고통분담’이라는 논리 그 자체에서 우리는 애당초에 이 ‘문민’정권이 인권교육에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문민시대’의 인권상황, 그 전망

‘문민’ 1년…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 누구나가 큰 이의 없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에 있어서 “팔목할만한” 향상이 있었다.”는 관측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으로는 ‘문민’과 ‘개혁’이라는 요란스러운 슬로건 공세로 인한 착각이고,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인 재야운동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시국·공안사건의 절대량이 감소한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오는 착각이다.^(주)

‘문민’과 ‘개혁’의 빛은 바래어가고 언어의 마술은 점점 약발을 잃고 있다. 청와대와 재벌과의 ‘관계정상화’, ‘YS’와 ‘전·노’와의 ‘대화해’, 그리고 구속되었던 비리 인사들의 잇단 석방과 대통령의 농민시위 강경진압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애초 ‘문민’의 꿈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정당하고 공평무사한 법과 제도에의 희망을 벌써 잊어가고 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의 ‘개발독재’를 방불케 하는 ‘고통분담과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우리의 인권상황에 분명 먹구름을 던지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동통제와 그로 말미암은 민생고,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의 동결 내지 삭감은 필연적으로 민주화 자유화의 절실한 요구를 낳을 것이며 이 요구를 압살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시절의 악법이 ‘문민’에게도 여전히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다. 경찰 안기부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은 제한적이나마 여전히 동원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잠시 고개를 숙였던 ‘정치판사’들이 다시 ‘사법부 개혁’에 코방귀 뀌게 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인 것이다.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조류 때문에 인권상황에 부분적인 개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에서도 군사독재하 인권상황의 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가만히 있어도 ‘문민’이 알아서 과거를 청산해주고 억압법제를 정비해주고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배려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꿈일 따름이다.

주) 법무부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3년 8월까지 시국·공안사건(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등,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통계는 아래와 같다.

연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등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	총계
1990	731	943	384	1,175	705		3,938
1991	551	570	624	774	493		3,012
1992	441	175	155	468	518	2,258	3,985
1993	115	53	58	93	558		877

(1993년 통계는 1월부터 8월까지)

* 노동조합법 위반사건의 구속율은 대체로 100명에 1명꼴도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로 인권시비가 야기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노동쟁의조정법일 터이나 이 네가지 법령 위반사건은 ‘문민’ 1년에 격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우리의 판단으로는 사건 수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사건다운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즉 작년 여름쯤에는 마치 경찰청 각 대공분실이 마지못해 할당량이라도 채우려는 듯이 ‘연’도 되기 어려운 사건을 연행, 기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노태훈사건, 민중정치연합사건, 국제공산주의자당·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사건 등). ‘문민’정부 출범 후 1년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39명 중 재판절차를 마친 것은 70명이며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8명(12.5%)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

펴낸날 · 94년 3월 25일

펴낸이 · 서 준 식

만든이 · 염 규 흥

펴낸곳 · 인권운동 사랑방

값 15,000원